|  |  |  |
| --- | --- | --- |
|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잠정방법**  국토자원부령 제80호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잠정방법>이 2018년 1월 26일 국토자원부 제1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쟝다밍(姜大明)  2018년 3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활동을 규율하고 부동산등기자료에 대한 관리•보호 및 이용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부동산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동산관리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부동산등기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부동산등기부 등 부동산등기의 결과;  (2) 부동산등기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자료, 부동산 권리의 근원, 등기원인, 부동산 권적(權籍) 조사결과 등 자료와 부동산등기기구의 심사자료를 포함한 부동산등기 원시자료.  부동산등기자료는 부동산등기기구가 책임지고 보관 및 관리한다.  제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부동산등기기구가 부동산등기자료 조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복사할 수 있다.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는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를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는 적법성, 대중의 편리 도모, 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6조 부동산등기기구는 부동산등기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정보 관리 기초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터넷 기술 운용, 자동조회 단말기 설치, 관련 장소에 등기정보 조회 접속구 설치 등 방식을 통하여 조회자에게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市)•현(縣)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조회자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기타 지역의 부동산등기기구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기구는 조회자에게 상응하는 기구에서 조회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구는 필요한 조회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 업무와 조회결과증명서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원시자료에 대한 조회 신청이 있을 경우 디지털화 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인출하여야 하며 확실한 수요와 필요성이 있을 경우 종이서류 형태의 부동산등기 원시자료를 인출할 수 있다.  제8조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는 조회신청서와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회주체;  (2) 조회목적;  (3) 조회내용;  (4) 조회결과에 대한 요구사항;  (5) 제출서류 리스트.  제9조 부동산권리자•이해관계자가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피위임자는 쌍방의 신분증명 원본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쌍방의 성명 또는 명칭, 공민신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 위임사항, 위임기간, 법률의무, 위임일자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그 조회•복사의 범위는 위임장에 의해 확정된다.  제10조 조회조건을 만족시키고 조회자가 부동산등기자료 조회결과증명서의 발행 또는 부동산등기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구는 현장 즉석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현장 즉석에서 제공할 수 없게된 경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조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회결과증명서에는 발행시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기구의 조회전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부동산등기기구는 조회를 거절하고 조회거절고지서를 발행한다.  (1) 조회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회를 신청한 주체 또는 조회사항이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조회를 신청한 목적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  부동산등기기구가 발행한 조회거절고지서에 불복하는 조회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12조 조회자가 조회를 신청한 부동산등기자료가 국가기밀과 관련된 경우 부동산등기기구는 국가기밀 보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동산등기기구는 조회기록부를 설치하여 조회기록을 확실히 하여야 하며 조회자, 조회목적 또는 조회용도, 조회시간 및 복사가 이뤄진 부동산등기자료의 유형, 조회결과증명서 발행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자 권리자의 조회  제14조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는 본 부동산등기의 결과와 본 부동산등기의 원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5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권리자는 다음 각 호의 색인 정보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민신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특정 주체의 신분 정보;  (2) 부동산의 구체적인 소재 위치 정보;  (3) 부동산권리증서 번호;  (4) 부동산 세대번호.  제16조 부동산등기기구는 자동조회 단말기를 설치하여 부동산권리자를 위한 부동산등기 결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조회 단말기는 관련 신분증명 검증 기능과 조회결과증명서 발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상속인•수유자(受遺者)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부동산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이 장(章)의 부동산권리자의 조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전 항의 상속인•수유자(受遺者)는 부동산등기자료 조회 시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遺贈者)의 사망증명서, 유언장 또는 유증부양협의서 등 상속 또는 유증행위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청산팀, 파산관리인, 재산관리대리인, 후견인 등 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가 있는 주체는 이 장(章)의 규정을 참조하여 관련 부동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한다.  본 조(條)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하는 경우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법에 의거하여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의 조회  제19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등기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저당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2)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미 제소 또는 중재신청이 이뤄짐으로써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3)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의 경우.  제20조 부동산등기 결과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는 부동산 이해관계자는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임대차, 저당으로 인해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저당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동산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미 제소 또는 중재신청이 이뤄짐으로써 이해관계가 구성된 경우 사건접수통보서 또는 중재신청접수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부동산 매매•임대•저당 의향이 있거나 부동산에 관한 제소 또는 중재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로 이 방법 제20조에 규정한 이해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자연적 상태;  (2) 부동산의 공유 상황 존재 여부;  (3) 부동산의 저당권등기, 예고(豫告)등기 또는 이의등기 존재 여부;  (4) 부동산의 압류(査封)등기 또는 기타 처분제한 상황 존재 여부.  제22조 이 방법 제21조에 규정한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1) 제공한 조회대상 부동산의 권리주체 명칭이 등기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한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 형태;  (3) 압류(査封)등기 또는 처분제한 수속처리를 요구한 기관의 명칭.  제23조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변호사는 이 방법 제8조, 제9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변호사증 및 변호사사무소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의 조사명령을 지참하여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변호사는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서류 외에 추가로 변호사증, 변호사사무소가 발행한 증명서류와 인민법원의 조사명령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동산의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색인으로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구체적인 소재 위치;  (2) 부동산권리증서 번호;  (3) 부동산 세대번호.  신청서 1부당 1개의 부동산등기 세대에 대한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  제25조 부동산 이해관계자와 그의 대리인은 이 방법에 따라 조회 신청 시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기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고 조회를 통해 획득한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지 아니할 시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하겠다는 확약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등기자료의 보호  제26조 조회자는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복사함에 있어 부동산등기자료를 지정장소 외부로 인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동산등기자료를 해체, 교체, 추출, 파기, 오손(汚損)하거나 조회설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회자가 전 항의 행위를 행한 겨우 부동산등기기구는 해당 조회자가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그를 위한 조회결과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27조 이미 전자 매개물을 확보하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종이서류 형태의 부동산등기 원시자료는 파기처리할 수 있다.  (1) 이미 말소처리가 된 저당권등기•지역권(地役權)등기로 말소처리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경우;  (2) 이미 말소처리가 된 압류(査封)등기•예고(豫告)등기•이의등기로 말소처리일로부터 5년이 만료된 경우.  제28조 이 방법 제27조에 규정한 파기처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동산등기자료의 파기처리는 부동산등기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등기기구는 종이서류 형태 부동산등기자료 파기처리 대장을 설치하여 파기처리된 종이서류 형태 부동산등기자료의 명칭, 수량, 시간, 장소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파기처리 담당자 및 파기처리 감독관이 대장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 부동산등기기구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외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유관 책임자에게 처분을 내린다. 범죄 구성 혐의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복사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에 대하여 조회•복사를 거절하거나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복사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에 대하여 조회•복사를 허용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자료를 사사로이 조회•복사하거나 조회결과증명서를 사사로이 발행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4) 부동산등기자료를 부정당한 활동에 이용하는 경우;  (5) 부동산등기자료 보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가 훼손•멸실되거나 타인에 의해 변조됨으로써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제30조 조회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범죄 구성 혐의가 있을 경우 유관기관으로 이송하여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부동산등기자료•등기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자료를 분실, 해체, 교체, 추출, 오손(汚損), 파기하는 경우;  (4) 부동산등기자료를 조회장소 외부로 무단 인출하거나 조회설비를 훼손하는 경우;  (5) 조회•복사 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부동산기기구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6) 조회결과증명서를 남용하는 경우.  제7장 부칙  제31조 유관 국가기관의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복사와 국가기관간 부동산등기 정보 공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32조 <부동산등기 잠정조례>가 실시되기 전에 이미 형성된 토지•건물•산림•임목•해역 등의 등기자료는 부동산등기자료에 해당된다. 부동산등기기구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공민•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에 의거하여 정부정보 공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부동산등기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유관 국토자원주관부서는 해당 신청인에게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등기자료 조회를 신청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12월 4일 국토자원부가 공포한 <토지등기자료 공개조회방법>(국토자원부령 제1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  | **不动产登记资料查询暂行办法**  国土资源部令第80号  　　《不动产登记资料查询暂行办法》已经2018年1月26日国土资源部第1次部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长 姜大明  2018年3月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不动产登记资料查询活动，加强不动产登记资料管理、保护和利用，维护不动产交易安全,保护不动产权利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不动产登记暂行条例》等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不动产登记资料，包括：  　　（一）不动产登记簿等不动产登记结果；  　　（二）不动产登记原始资料，包括不动产登记申请书、申请人身份材料、不动产权属来源、登记原因、不动产权籍调查成果等材料以及不动产登记机构审核材料。  　　不动产登记资料由不动产登记机构负责保存和管理。  　　第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不动产登记机构负责不动产登记资料查询管理工作。  第四条 不动产权利人、利害关系人可以依照本办法的规定，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  　　不动产权利人、利害关系人可以委托律师或者其他代理人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  　　第五条 不动产登记资料查询，遵循依法、便民、高效的原则。  　　第六条 不动产登记机构应当加强不动产登记信息化建设，以不动产登记信息管理基础平台为基础，通过运用互联网技术、设置自助查询终端、在相关场所设置登记信息查询端口等方式，为查询人提供便利。  第二章 一般规定  　　第七条 查询不动产登记资料，应当在不动产所在地的市、县人民政府不动产登记机构进行，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查询人到非不动产所在地的不动产登记机构申请查询的，该机构应当告知其到相应的机构查询。  　　不动产登记机构应当提供必要的查询场地，并安排专门人员负责不动产登记资料的查询、复制和出具查询结果证明等工作。  　　申请查询不动产登记原始资料,应当优先调取数字化成果，确有需求和必要，可以调取纸质不动产登记原始资料。  　　第八条 不动产权利人、利害关系人申请查询不动产登记资料，应当提交查询申请书以及不动产权利人、利害关系人的身份证明材料。  　　查询申请书应当包括下列内容：  　　（一）查询主体；  　　（二）查询目的；  　　（三）查询内容；  　　（四）查询结果要求；  　　（五）提交的申请材料清单。  　　第九条 不动产权利人、利害关系人委托代理人代为申请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被委托人应当提交双方身份证明原件和授权委托书。  　　授权委托书中应当注明双方姓名或者名称、公民身份号码或者统一社会信用代码、委托事项、委托时限、法律义务、委托日期等内容，双方签字或者盖章。  　　代理人受委托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的，其查询、复制范围由授权委托书确定。  　　第十条 符合查询条件，查询人需要出具不动产登记资料查询结果证明或者复制不动产登记资料的，不动产登记机构应当当场提供。因特殊原因不能当场提供的，应当在5个工作日内向查询人提供。  　　查询结果证明应当注明出具的时间，并加盖不动产登记机构查询专用章。  　　第十一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动产登记机构不予查询，并出具不予查询告知书：  　　（一）查询人提交的申请材料不符合本办法规定的；  　　（二）申请查询的主体或者查询事项不符合本办法规定的；  　　（三）申请查询的目的不符合法律法规规定的；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查询人对不动产登记机构出具的不予查询告知书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第十二条 申请查询的不动产登记资料涉及国家秘密的，不动产登记机构应当按照保守国家秘密法等有关规定执行。  　　第十三条 不动产登记机构应当建立查询记录簿，做好查询记录工作，记录查询人、查询目的或者用途、查询时间以及复制不动产登记资料的种类、出具的查询结果证明情况等。  第三章 权利人查询  　　第十四条 不动产登记簿上记载的权利人可以查询本不动产登记结果和本不动产登记原始资料。  　　第十五条 不动产权利人可以申请以下列索引信息查询不动产登记资料，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一）权利人的姓名或者名称、公民身份号码或者统一社会信用代码等特定主体身份信息；  　　（二）不动产具体坐落位置信息；  　　（三）不动产权属证书号；  　　（四）不动产单元号。  　　第十六条 不动产登记机构可以设置自助查询终端，为不动产权利人提供不动产登记结果查询服务。  　　自助查询终端应当具备验证相关身份证明以及出具查询结果证明的功能。  　　第十七条 继承人、受遗赠人因继承和受遗赠取得不动产权利的，适用本章关于不动产权利人查询的规定。  　　前款规定的继承人、受遗赠人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除提交本办法第八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被继承人或者遗赠人死亡证明、遗嘱或者遗赠抚养协议等可以证明继承或者遗赠行为发生的材料。  　　第十八条 清算组、破产管理人、财产代管人、监护人等依法有权管理和处分不动产权利的主体，参照本章规定查询相关不动产权利人的不动产登记资料。  　　依照本条规定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除提交本办法第八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依法有权处分该不动产的证明材料。  第四章 利害关系人查询  　　第十九条 符合下列条件的利害关系人可以申请查询有利害关系的不动产登记结果：  　　（一）因买卖、互换、赠与、租赁、抵押不动产构成利害关系的；  　　（二）因不动产存在民事纠纷且已经提起诉讼、仲裁而构成利害关系的；  　　（三）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二十条 不动产的利害关系人申请查询不动产登记结果的，除提交本办法第八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下列利害关系证明材料：  　　（一）因买卖、互换、赠与、租赁、抵押不动产构成利害关系的，提交买卖合同、互换合同、赠与合同、租赁合同、抵押合同；  　　（二）因不动产存在相关民事纠纷且已经提起诉讼或者仲裁而构成利害关系的，提交受理案件通知书、仲裁受理通知书。  　　第二十一条 有买卖、租赁、抵押不动产意向，或者拟就不动产提起诉讼或者仲裁等，但不能提供本办法第二十条规定的利害关系证明材料的，可以提交本办法第八条规定材料，查询相关不动产登记簿记载的下列信息：  　　（一）不动产的自然状况；  　　（二）不动产是否存在共有情形；  　　（三）不动产是否存在抵押权登记、预告登记或者异议登记情形；  　　（四）不动产是否存在查封登记或者其他限制处分的情形。  　　第二十二条 受本办法第二十一条规定的当事人委托的律师，还可以申请查询相关不动产登记簿记载的下列信息：  　　（一）申请验证所提供的被查询不动产权利主体名称与登记簿的记载是否一致；  　　（二）不动产的共有形式；  　　（三）要求办理查封登记或者限制处分机关的名称。  　　第二十三条 律师受当事人委托申请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除提交本办法第八条、第九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律师证和律师事务所出具的证明材料。  　　律师持人民法院的调查令申请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除提交本办法第八条规定的材料外，还应当提交律师证、律师事务所出具的证明材料以及人民法院的调查令。  　　第二十四条 不动产的利害关系人可以申请以下列索引信息查询不动产登记资料：  　　（一）不动产具体坐落位置；  　　（二）不动产权属证书号；  　　（三）不动产单元号。  　　每份申请书只能申请查询一个不动产登记单元。  　　第二十五条 不动产利害关系人及其委托代理人，按照本办法申请查询的，应当承诺不将查询获得的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用于其他目的，不泄露查询获得的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并承担由此产生的法律后果。  第五章 登记资料保护  　　第二十六条 查询人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的，不得将不动产登记资料带离指定场所，不得拆散、调换、抽取、撕毁、污损不动产登记资料，也不得损坏查询设备。  　　查询人有前款行为的，不动产登记机构有权禁止该查询人继续查询不动产登记资料，并可以拒绝为其出具查询结果证明。  　　第二十七条 已有电子介质，且符合下列情形之一的纸质不动产登记原始资料可以销毁：  　　（一）抵押权登记、地役权登记已经注销且自注销之日起满五年的；  　　（二）查封登记、预告登记、异议登记已经注销且自注销之日起满五年的。  　　第二十八条 符合本办法第二十七条规定销毁条件的不动产登记资料应当在不动产登记机构指定的场所销毁。  　　不动产登记机构应当建立纸质不动产登记资料销毁清册，详细记录被销毁的纸质不动产登记资料的名称、数量、时间、地点，负责销毁以及监督销毁的人员应当在清册上签名。  第六章 罚 则  　　第二十九条 不动产登记机构及其工作人员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对有关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涉嫌构成犯罪的，移送有关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一）对符合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条件的申请不予查询、复制，对不符合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条件的申请予以查询、复制的；  　　（二）擅自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或者出具查询结果证明的；  　　（三）泄露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的；  　　（四）利用不动产登记资料进行不正当活动的；  　　（五）未履行对不动产登记资料的安全保护义务，导致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毁损、灭失或者被他人篡改，造成严重后果的。  　　第三十条 查询人违反本办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移送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涉嫌构成犯罪的，移送有关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一）采用提供虚假材料等欺骗手段申请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的；  　　（二）泄露不动产登记资料、登记信息的；  　　（三）遗失、拆散、调换、抽取、污损、撕毁不动产登记资料的；  　　（四）擅自将不动产登记资料带离查询场所、损坏查询设备的；  　　（五）因扰乱查询、复制秩序导致不动产登记机构受损失的；  　　（六）滥用查询结果证明的。  第七章 附 则  　　第三十一条 有关国家机关查询复制不动产登记资料以及国家机关之间共享不动产登记信息的具体办法另行规定。  　　第三十二条 《不动产登记暂行条例》实施前已经形成的土地、房屋、森林、林木、海域等登记资料，属于不动产登记资料。不动产登记机构应当依照本办法的规定提供查询。  第三十三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据《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以申请政府信息公开的方式申请查询不动产登记资料的，有关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告知其按照本办法的规定申请不动产登记资料查询。  　　第三十四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2002年12月4日国土资源部公布的《土地登记资料公开查询办法》（国土资源部令第14号）同时废止。 |